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4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14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우,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 1. 제안이유

자살은 고인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 동료 등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남기는 사회적 문제임. 이에 현행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자살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 동료 등 지인들까지를 포함시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조에 “자살유족 등”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나. 지원 대상을 “자살유족 등”으로 확대 함(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 의약과

라. 입법예고 : 2025. 8. 26. ~ 2025. 8.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 · 친구 · 동료 등을 말하며, 이 조례 제15조에 서만 적용된다.

제15조의 제목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를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자의 유가족”을 “자살유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살유족 등</u>”이란 자살자의 <u>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u> <u>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u> <u>친척 · 친구 · 동료 등을 말하</u>며, 이 조례 제15조에서만 적용된다.</p>
<p>제15조(<u>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u>)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u>자살자의 유가족</u>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5조(<u>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u>) ① ----- <u>자살유족</u> -----.</p> <p>② (현행과 같음)</p>